보건복지부 | 보도참고자료 |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6. 11.(목)

“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분쟁 해결” 협의체 통해 「의료분쟁조정법」 하위법령 마련한다

- 제도 시행 준비 위해 의료계, 환자·소비자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개시(6.11.) -
-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, 중대한 과실 기준, 설명의무 내용·방식 등 논의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**6월 11일(목) 오후 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**에서 **「의료분쟁조정법」 하위법령** 마련 등 **제도 시행 준비**를 위한 **협의체 1차 회의**를 개최하였다.

협의체는 **내년 5월 시행될 「의료분쟁조정법」*** 의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**의료계, 환자·소비자계, 전문가** 등 **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**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, **올해 11월까지 집중적인 논의**를 이어갈 예정이다.

* [보도참고자료] 환자·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, 「의료분쟁조정법」 국회 본회의 통과('26.4.23.)

협의체에서는 ▲**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구체화**, ▲**중대한 과실의 기준**, ▲**설명의무 내용·방식**, ▲**책임보험 보장 기준**, ▲**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** 등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
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“의료사고 발생 시 **환자-의료진의 소통**을 기반으로 **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**과 함께 **의료진이 진료에 전념**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, “**각 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**하여 **「의료분쟁조정법」 하위법령을 마련**하고 **제도가 현장에 안착**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제1차 「의료분쟁조정법」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

담당 부서	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	책임자
		담당자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|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|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제1차 「의료분쟁조정법」 하위법령 협의체 회의 개요**

□ 개요

○ **(일시 / 장소) '26.6.11.(목) 13:00~15:00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**

○ **(참석자)** 복지부, 유관 부처, 의료계, 환자·소비자계 등 총 23명 참석

- **(복지부)** 보건의료정책관, 의료기관정책과장
- **(유관 부처)** 법무부 형사법제과장,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, 금융감독원 보험상품분쟁1국 손해보험상품팀장
- **(의료계)**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, 대한전공의협의회
- **(환자·소비자계)** 선천성심장병 환우회, 소비자공익네트워크, 중증질환연합회
- **(보험 전문)** 손해보험협회, 보험개발원 등

○ **(논의사항)**

- 개정 「의료분쟁조정법」 주요 내용
- 협의체 운영 방향, 하위법령 개정 등 과제 논의

□ 진행 순서

시 간		내 용	비 고
13:00~13:10	10′	■ 인사말	보건의료정책관
13:10~13:30	20′	■ 위촉장 수여	〃
13:30~13:50	20′	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내용	의료기관정책과장
13:50~15:00	70′	■ 협의체 운영 방향, 하위법령 개정 논의	